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166

제출연월일 : 2020. 11. .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하남정수장 관리동 증축 사업

1. 제안이유

- □ 현재 하남정수장 관리동(감시제어실, 서고, 수질실험실, 사무실 및 식당 등)내 상수도과(상수도관리팀, 요금팀, 시설관리팀 및 수질관리팀) 직원들이 집중 배치되어 업무 효율성 저하
- □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우리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더불어 늘어나는 공무원 수를 감안하여 부족한 업무 공간 확보를 통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수도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2. 관련근거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내용

□ 취득대상 재산현황

○ 사 업 명 : 하남정수장 관리동 증축사업

○ 사업위치 : 하남시 창우동 21-5번지(하남정수장내 부지)

○ 건축규모 : 160㎡/층 1층 - 160㎡, 2~4층(전기실 상부 활용) - 320㎡

○ 연 면 적 : 1,120m² - 별도 야외주차장 신설 11면

○ 총사업비 : 7.100백만원(공사비 6.000백만원, 용역비등 11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2023이후
계	7,100	_	600	_	6,500
국 비	_	_	_	_	_
시 도 비	_	_	_	_	_
시군구비	7,100	_	600	_	6,500
지 방 채	-	_	_	_	_
민간자본	_	_	_	_	_
기 타	_	_	_	_	_

○ 재원 : 시비 100% (일반회계), 국비 0%

○ 토지 : 시유지 활용 (창우동 21-5번지)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억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71.0			
공	소	계	_	60.0		
사 비	○ 하남정수장 관리동 증축사업(주차장 포함): 60억 ○ 분야별 공사비 : 계 60억원 (건축 48, 토목 12)			60.0		
	소	계	_	11.0		
용	■ 설	계 비	○ 하남정수장 관리동 증축 및 주차장 신설 1식	6.0		
역비	■ 감	리 비	○ 하남정수장 관리동 증축 및 주차장 신설 1식 ○ 60억원 × 8.52%(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보통)) = 5.0억원 ※ 2020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참조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20.10 ~ 2021.04. :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 2021.03 ~ 2024.02.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1.04 ~ 2024.02.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등 관련 인허가 추진

○ 2022.02 ~ 2022.12. :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및 환경성 검토

○ 2023.08 ~ 2024.02. : 건축인허가 및 디자인 심의

○ 2024.03 ~ 2025.03. : 공사착공 및 준공

□ 주관부서 검토의견

○ 우리시 인구의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더불어 늘어나는 공무원 수를 감안하여 부족한 업무 공간 확보를 통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 위해 하남정수장 관리동 확충(증축)을 추진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붙임 1. 관련법령 1부.

- 2. 비용추계서 1부.
-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붙임 1】관련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중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중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 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붙임 2】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 7조 및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 나. 비용 발생 요인
 - 하남정수장 관리동 증축사업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으로 한다.
- 추계범위는 설계용역비, 감리용역비, 공사비, 시설부대비 등 하남정수장 관리동 증축사업 공사 시 소요되는 총 사업비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이후	비고
하남정수장 관리동 증축사업	7,100		600	_	6,500	-

- 다. 재원조달방안 : 2021년 ~ 2025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혁신기획관과 협의 필요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 4. 작성자 : 친환경사업소 상수도과 과장 유 찬 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계
,	세 입					
,	세 출	600,000	0	3,500,000	3,000,000	7,100,000
하남정수장 관리동 확충(증축)		600,000	0	3,500,000	3,000,000	7,100,000
재원 조달						
	소 계					
의존	보조금					
재원	지방교부세					
	소 계					
자체 수입	지 방 세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600,000	0	3,500,000	3,000,000	7,100,000
기 타 (기 부지확보)						

【붙임 3】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 치 도

N

사업명 : 하남정수장 관리동 증축사업

범례금회시공적색기 시 공청색장래시공황색

○ 위치 : 하남시 창우동 21-5번지



□ 현 장 사 진

